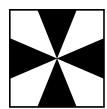


# 정 관

2022.10.15



사단법인 한국단학회 연정원

## 목    록

<p>제1장 총칙 .....3쪽</p> <p>제1조 (명칭)</p> <p>제2조 (사무소의 소재지)</p> <p>제3조 (목적)</p> <p>제4조 (사업)</p> <p>제5조 (본 회 공여 이익의 수혜자)</p> <p>제2장 회원 .....3쪽</p> <p>제6조 (회원의 자격)</p> <p>제7조 (회원의 종류)</p> <p>제8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</p> <p>제9조 (회원의 탈퇴)</p> <p>제10조(회원의 징계)</p> <p>제3장 임원 .....4쪽</p> <p>제11조 (임원의 종류와 자격 )</p> <p>제12조 (임원의 선임 및 해임)</p> <p>제13조 (임원의 임기)</p> <p>제14조 (임원의 직무)</p> <p>제15조 (상임이사의 임무)</p> <p>제16조 (이사장 직무 대행자의 지명)</p> <p>제17조 (감사의 기능)</p> <p>제18조 (고문)</p> <p>제4장 총회 .....5쪽</p> <p>제19조 (총회의 구성)</p> <p>제20조 (총회의 소집)</p> <p>제21조 (총회의 기능)</p> <p>제22조 (총회의결 정족수)</p> <p>제23조 (총회 소집의 특례)</p> <p>제24조 (총회의결 제척 사유)</p> <p>제5장 이사회 .....6쪽</p> <p>제25조(이사회 구성 및 기능)</p> <p>제26조 (이사회 회기 및 소집)</p> <p>제27조 (의결 정족수)</p>	<p>제28조 (이사회 의결 제척)</p> <p>제29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</p> <p>제30조 (서면결의 금지)</p> <p>제6장 사무국 .....7쪽</p> <p>제31조 (사무국)</p> <p>제7장 평위원회 .....8쪽</p> <p>제32조 (평위원회의 설치)</p> <p>제33조 (평위원의 기능)</p> <p>제34조 (평위원의 선출 방법 및 임기)</p> <p>제35조 (평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정족수)</p> <p>제8장 재산 및 회계 .....8쪽</p> <p>제36조 (재산의 구분)</p> <p>제37조 (재산의 관리)</p> <p>제38조 (경비 조달 방법)</p> <p>제39조 (세입세출예산)</p> <p>제40조 (세계잉여금)</p> <p>제41조 (예산외의 채무 부담등)</p> <p>제42조 (회계년도 및 결산)</p> <p>제43조 (임원의 보수)</p> <p>제44조 (임원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)</p> <p>제45조 (회계 감사)</p> <p>제9장 보칙.....10쪽</p> <p>제46조 (정관의 개정)</p> <p>제47조 (후원회)</p> <p>제48조 시행세칙)</p> <p>제49조 (법인해산)</p> <p>부칙.....10쪽</p> <p>제1조 (시행일)</p> <p>제2조 (경과조치)</p> <p>제3조 (설립자의 기명날인)</p>
---	--

## 제1장 총 칙

### 제 1 조 (명칭)

- ①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단학회 연정원”(이하 “본 회”라 한다)
- ② 본 회의 영문 표기는 The Korean Dan Society of Yeon-Jung-Won으로 하고 약칭은K.D.S.Y.J라 한다.

### 제 2 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- ①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국내외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### 제 3 조 (목적)

본회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통해 민족의 자존을 드높이고 전통 문화를 진흥시키며 민족, 고유의 단학수련법(조식,명상)과 도인수련법(기체조,태극권)을 보급하여, 국민의 심신 건강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.

### 제 4 조 (사업)

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.

- ① 단학(丹學) 연수회, 강연회 및 학술발표회의 개최
- ② 민족 고유의 심신수련법인 단학수련법(조식,명상)과 도인수련법(기체조, 태극권) 강연을 한다.
- ③ 회보, 기타 도서 및 연구자료의 발간 및 배부
- ④ 단학수련(조식)에 뜻을 둔 이들을 위해 단학 수련장을 개설 제공한다.
- ⑤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을 한다.

### 제 5 조 (본회 공여이익의 수혜자)

-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
- ② 본회 목적사업의 참여자는 출생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,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

## 제2장 회 원

### 제 6 조 (회원의 자격)

- ①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단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 혹은 관심을 가진 인사로서 본회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,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 제 7 조 (회원의 종류)

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
- ① 정회원은 본회의 중급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
- ② 준회원은 본회의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
- ③ 명예회원은 본회 및 단학의 연구발전에 공헌이 큰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

제 8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- ①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- ②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, 의결권을 갖는다
- ③ 이미 납부된 회비 및 찬조금, 기부금에 대하여는 환급하지 않는다.
- ④ 기타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의해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 9 조 (회원의 탈퇴)

- ① 회원은 이사장(원장)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제 10 조 (회원의 징계)

- ①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,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회원자격정지, 견책 또는 제명할 수 있다. 단, 아무 연락 없이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정지된다.

**제3장 임원**

제 11 조 (임원의 종류와 자격)

- ① 임원에는 이사장(원장)(본회의 명칭에 따라 원장이라 칭함) 1인, 이사 9인 이상 15인(이사장(원장) 포함)이내, 감사 2인, 지부장을 둔다.
- ② 모든 임원은 회원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.

제 12 조 (임원의 선임 및 해임방법)

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
- ① 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- ④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은 그 임원을 선출한 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

제 13 조 (임원의 임기 및 자격)

- ① 이사장(원장)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-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제 14 조 (임원의 직무)

- ① 이사장(원장)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(원장)으로부터 위

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- ③ 감사는 본회 업무 전반을 감사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.

#### 제 15 조 (상임이사의 임무)

- ① 이사장(원장)은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지정한 사업과 기타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.

#### 제 16 조 (이사장직무대행자의 지명)

- ① 이사장(원장)의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그 임무를 대행하며, 각각의 유고가 동시에 발생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이사장(원장)과 상임이사 직무대행의 선출은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개최하고, 출석이사 중 년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#### 제 17 조 (감사의 기능)

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고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- ① 본회의 재산상황 및 예산결산을 감사하는 일.
-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.
- ③ 위의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,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이사장(원장)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.
-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, 평위원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.
- ⑤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, 평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(원장)에게 또는 이사회, 평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.
- ⑥ 이사회 및 평위원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.

#### 제 18 조 (고문)

- ① 본 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. 고문은 이사회에의 추천으로 이사장(원장)이 위촉한다.

### 제4장 총회

#### 제 19 조 (총회의구성)

-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#### 제 20조 (총회의 소집)

- ① 총회는 이사장(원장)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 정기총회는 년 1회 음력 2월 중에,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고 이사장(원장)은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장(원장)은 회의안건을 명기하고 적어도 회의 10일 전에 회보 및 기타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 21 조 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③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-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⑤ 사업계획의 승인
- ⑥ 기타 중요 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
제 22 조 (총회의결 정족수)

- ① 총회는 재적 회원 5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- ②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(위임자제외)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회원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
- ④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⑤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총회를 열고 결의 할 수 있다.

제 23 조 (총회소집의 특례)

- ① 이사장(원장)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- 1.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- 2.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- 3. 재적 회원 5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결위 되거나 이를 기피 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 24 조 (총회의결 제적 사유)

의장 및 회원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총회의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-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- ②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**제5장 이사회**

제 25 조 (이사회 의 구성 및 기능)

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, 다음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

- ①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-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③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
- ④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- 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⑥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
⑦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26 조 (이사회회 회기 및 소집)

- ① 이사회회는 정기이사회회와 임시이사회회로 나누며, 정기이사회회는 년2회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회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27 조 (의결정족수)

- ① 이사회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- ② 이사회회의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③ 고문 및 감사는 이사회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 28 조(이사회회 의결제척)

이사회회의 의결제척 사유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-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 29 조 (이사회회 소집의 특례)

-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- 1.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받은 때
  - 2. 제 17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이사회회의 소집권자가 결위 되거나 또는 이사회회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소집요구자는 평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 2 항에 의한 이사회회는 출석이사 중 년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
제 30조 (서면결의금지)

- ① 이사회회의 안건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**제6장 사무국**

제 31 조 (사무국)

본회의 일반사무 및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- ① 사무국에는 국장 및 이를 보좌하는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사무국의 직제,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제7장 평위원회

### 제 32 조 (평위원회의 설치)

- ① 본회의 원활한 발전육성과 사업운영을 위하여 평위원회를 둔다.
- ② 평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이사장은 평위원회 의장이 된다.

### 제 33조 (평위원회의 기능)

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,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
- ①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
- ② 총회의 인준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 한다
- ③ 임원 후보의 추천을 심의 한다
- ④ 정관의 시행세칙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해 심의 한다
- ⑤ 기타 각종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를 한다.

### 제 34 조 (평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)

- ① 평위원은 전임임원과, 정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3년으로 한다.
- ② 평위원은 결원이 생기면 즉시 이사장이 총원하며 임기는 총원 시점에서 3년으로 한다.

### 제 35 조 (평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)

- ① 평위원회는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7일전에 안건을 명기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② 평위원회는 재적평위원 3분의 1(다만, 서면위임은 출석으로 간주)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평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③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투표 등으로 평위원회의 소집을 대신할 수 있다.

## 제8장 재산 및 회계

### 제 36 조 (재산의 구분)

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-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및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-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- ③ 세입계 잉여금 적립금

### 제 37 조 (재산의 관리)

- ① 제36조 제①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본회가 매수, 기부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


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, 및 기타관리(제①항 및 제②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8 조 (경비의 조달방법)

①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교육연수비, 회원의 회비, 회원의 기부금 및 보조금, 자산에서 생긴 수익, 기부금,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 39조 (세입세출예산)

① 본회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고 총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.

제 40조 (세계잉여금)

① 매 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
제 41 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
①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제 42 조 (회계년도 및 결산)

① 본 회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.

② 결산은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43 조 (임원의 보수)

①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단,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경비가 소요 되는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44 조 (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)

① 재산은 본 회와 다음 각호 1에 해당 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1. 본 회 설립자

2. 본 회의 임원
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,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
4. 본 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
② 제①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본 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 45 조 (회계감사)

①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
②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 제9장 보칙

### 제 46 조 (정관의 개정)

- ①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### 제 47 조 (후원회)

- ① 본회의 운영에 재정적인 지원 및 본 회 발전에 협조를 하고 자 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
- ② 후원회 운영규칙은 후원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

### 제 48 조 (시행세칙)

-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

### 제 49 조 (법인해산)

-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.

## 부칙

### 제 1 조 (시행일)

- ①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제 2 조 (경과조치)

- ①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### 제 3 조 (설립자의 기명날인)

- ①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2022년 10월 15일

발기인 (대표) 성태용 (인)

발기인 최병호 (인)

발기인 김정인 (인)

발기인 김규성 (인)